

GS리테일 ESG위원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내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회사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하 “ESG”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사의 ESG 활동(이하 “ESG 활동”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비재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환경: 종합 유통 친환경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관련 영향 관리
2. 사회: 고객 및 협력사, 경영주,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 하고, 안전보건·인권존중·소비자 권익보호·정보보호는 물론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공정 거래 관리 강화
3. 지배구조: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이사회 운영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보, 윤리경영 강화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회사의 ESG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 그 활동을 관리·감독·평가·검토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 2 장 구 성

제6조(위원)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 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사무국)

- 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② 사무국의 조직장은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사무국은 필요 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회사의 법무, 재무, 인사 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 관련 정보 및 자료, 협업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9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1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의사항)

- ① 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대해 결의한다.
 1. ESG 관련 주요 정책, 계획 등의 수립, 관리에 관한 사항
 2. ESG 관련 제반 규정 제정 및 개정
 3. 건별 3억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 집행. 단,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부득이한 경우 대표이사가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4. 기후변화 관련한 회사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요 ESG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의사결정필요 사항
 6. 기타 ESG 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1. ESG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수시 진행사항
 2. ESG 관련 이슈사항 발생 시 관련 사항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
- ③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의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제15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